

-초안-

장관령

불기…기준을 따르는

L 타입 차량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제품 규정

불기 2562년 산업제품 표준법 (8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 제17조 제1항과, 불기 2558년 산업제품 표준법 (7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 제58조제1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산업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장관령을 공포한다.

1. 이 장관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2. 이 장관령은 납축전지 유형이 아닌, 배터리로만 구동되는 L 타입 전기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Rechargeable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REESS) 산업제품에 적용된다.
3.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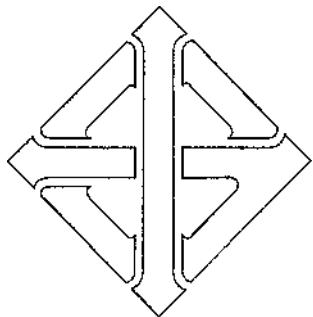
“L 타입 차량”은 바퀴가 네 개 이하로, TIS(태국산업표준) 2390-2563호에 따라 동력 차량 및 트레일러에 의해 시동 및 운행하는 자동차의 유형을 의미한다.

4. L 타입 차량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제품은 불기 2562년 9월 16일 공고한 불기 2511년 L 타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규정: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법령의 내용에 따른 산업부 공고 제5414호 (불기 2562년)에 의거한 TIS 2952-2561호의 기준, 특히 제6조 Part 2 REESE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른 제1조. 범위의 하위 항목 1.2. Part 2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안전성의 내용에 따른다.

불기 2567년에 공고

Miss 펌팟타라 위차이꾼

산업부장관



태국산업표준

THAI INDUSTRIAL STANDARD

TIS 2952-2561

L 타입 차량: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VEHICLES OF CATEGORY L WITH REGARD TO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ELECTRIC POWER TRAIN

산업표준원

산업부

ICS 43.140

ISBN 978-616-475-096-8

산업제품 표준
L 타입 차량: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TIS 2952-2561

산업표준원

방콕 프라람 6로 산업부 10400

전화 0 2202 3300

47/5차 학술소위원회

전기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 47/5 학술소위원회는 자동차의 오염, 소음 및 에너지 관련 47차 학술위원회로부터 임명을 받아, L타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초안: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을 마련하였다.

소위원회 위원장

Mr. 타나왓 아로라
태국자동차산업협회

소위원회 위원

Mr. 콤싼 추카우
태국자동차산업협회

Mr. 쏨뎃 쟁쑴라싹
국가 전자 및 컴퓨터 기술센터

Mr. 피仄 펌쁘라仄

Mr. 티라仄 판파프라이

Mr. 아텃 왓싸나몽콘
전기 및 전자학회

Miss 왓다나 인팅추아이

푼편 쟁방쁠라 부교수
왕실 후원 태국기술원

Mr. 쏨타야 폰짜런
태국 전기자동차협회

차나 이양까몬씽 조교수

Mr. 깃차논 르양찌라낏

Mr. 폰렷 딴띠윗싸누쏘펫
태국 생산전기부

Mr. 쏨싹 뼈랑텅

Mr. 다나이 추펫

Mr. 위치안 요판동
도시 전기국

Miss 빤찢 씨라치와단
지방 전기국

Mr. 쑤라仄 머땀본

Mr. 쏨차이 편파나왕
태국산업회 자동차 산업부

Mr. 왓차라퐁 셋티퐁

Mr. 씨라 우돔씰라빠
태국 자동차부품 생산자협회

Miss 완나카낫 닌투昂

Mr. 럭싹 나와위만
태국 오토바이 사업자협회

Mr. 아띠판 깨우쁘라仄씰라빠

Mr. 빤 캄푸

Miss ॲ짜리야 아란씨	오염관리청
Mrs. 니파뀐 짜이쌤	
Miss 만위파 꾸쏜	
Mr. 끼약나롱 크루바	육상운송청
Mr. 짓뚜폰 쓰아미	
Mr. 위라웃 껴웡파닛	자동차학회
Mr. 위라톤 쑥촘분	
소위원회 위원 및 서기관	
Mr. 싸타뀐 룽랏따나우본	산업표준원
Miss 나이하마 유쏘	

여행사 이전 외지인

현재 제조사와 소비자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청정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자동차 산업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전기자동차,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용 부품, 장치들의 생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오토바이와 같은 소형 전기차의 경우 소비자들은 기름을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용 측면에서의 안전성과 태국 내 전기자동차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L 타입 차량 산업체품 표준: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산업체품 표준은 UN Regulation No. 136 Revision 2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vehicles of category L with regard to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electric power train(UN 규정 제136호 2차 개정판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과 관련된 카테고리 L 차량의 승인에 관한 통일된 조항)을 수정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주요 수정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UN 규정 제136호(UN Regulation No. 136) 제3조. 승인 신청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36호(UN Regulation No. 136) 제4조.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36호(UN Regulation No. 136) 제7조 형식승인의 수정 및 연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36호(UN Regulation No. 136) 제8조. 생산 적합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36호(UN Regulation No. 136) 제9조. 생산 부적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36호(UN Regulation No. 136) 제10조. 생산 완전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36호(UN Regulation No. 136) 제11조 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공인 3자 기관 (Technical Service) 및 형식승인 기관의 이름과 주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체품 표준 위원회는 이 표준을 검토하고, 불기 2558년 산업체품 표준법 (7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체품 표준법의 제15조에 의거하여 내각이 공고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산업부 공고

5414호 (불기 2562년)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의

내용에 의거하여 발의

L 타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규정

: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불기 2558년 산업제품 표준법 (7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의 제15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산업부장관은 TIS 2952-2561호 L 타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을 이 공고의 말미에 세부사항을 첨부한 바와 같이 공고한다.

이는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불기 2562년 9월 16일에 공고

쑤리야 쭁룽르앙낏

산업부장관

산업제품 표준

L 타입 차량: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전반적 내용

이 산업제품 표준은 UN Regulation No. 136 Revision 2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vehicles of category L with regard to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electric power train(UN 규정 제136호 2차 개정판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과 관련된 카테고리 L 차량의 승인에 관한 통일된 조항)을 영어판 UN Regulation을 기본으로 적용해서 수정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주요 수정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범위

1. 이 산업제품 표준은 자동차의 충돌 이후의 안전성에 필요한 특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1.1 Part 1 최대 속도가 6km/h를 초과하도록 설계된 L 타입 차량의 전기 동력전달시스템과 관련한 안전성에 필요한 특성. 하나 이상의 트랙션 모터(traction motor)가 장착되어 있고, 전기로 구동되고 전기 그리드와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고전압버스와 직류 전기에 의해 연결된 고전압 시스템 및 부품을 포함.

1.2 Part 2 최대 속도가 6km/h를 초과하도록 설계된 L 타입 차량의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Rechargeable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REESS)과 관련한 안전성에 필요한 특성. 하나 이상의 트랙션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전기로 구동되고 전기 그리드와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

Part 2는 엔진의 시동 및/또는 조명 및/또는 기타 차량 보조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원을 제공하는,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36호 제1조에 따른다.

2. 정의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36호 제2조에 따른다.

3. 승인 신청 제출

UN 규정 제136호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승인

UN 규정 제136호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Part 1 차량의 전기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36호 제5조에 따른다.

6. Part 2 REESE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36호 제6조에 따른다.

7. 형식승인의 수정 및 연장

UN 규정 제136호 제7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8. 생산 적합성

UN 규정 제136호 제8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생산 부적합에 대한 처벌

UN 규정 제136호 제9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생산 완전 중단

UN 규정 제136호 제10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공인 3자 기관(Technical Service) 및 형식승인 기관의 이름과 주소

UN 규정 제136호 제11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2. 별첨

세부사항은 관련 UN 규정 제136호 별첨(ANNEX)에 따른다.